

忠州市議會 第139回 臨時會

2009.07.22 (화) 11:00

條例案審查報告書

- | |
|---|
| <p>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②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7.14	2009.7.14	2009.7.21	2009.7.21	기획감사과장
②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여성회관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별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본 조례 [별표]에서 삭제하여 중복 관리를 피하고 위탁근거 조례가 없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신설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위탁사무 추가(1건)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단,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제외)

나. 개별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 삭제(13건)

- 충주시학사운영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청소년수련원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탄금사정관리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 탄금테니스장관리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 충주시택견전수관운영관리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충주시수안보온천장운영관리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
-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
-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충주시 하수도 조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2]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 여성회관 신축이전에 따라 명칭공모 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설의 신축과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제명 변경
 - 명칭 : 충주시여성회관 → 충주여성문화회관
- 나. 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신설(제2조)
- 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함(제10조)
- 라. 시설 신설에 의한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사용료 추가(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중복관리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 위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전체 13건 중 13건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추가로 규정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검토결과

금번에 삭제되는 내용 중 문화체육과 소관인 '탄금사정'관리 업무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그 위탁 근거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탄금사정'이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금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관리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임. (※ 법령 및 조례 발체내용 참조)

2]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여성회관을 금릉동 183-1번지에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명칭을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명명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축된 시설에 세미나실과 야외공연 시설이 기존시설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이 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결정하는
사항임.

○ 명칭을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명명함에 있어서는

전국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들을 대상으로 시와 의회,
문화,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충주시의 각 분야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신축여성회관 명칭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명칭도
'충주시여성회관'이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변경됨.

- 선정된 명칭은 명칭선정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의 다양성 추구하고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현실에 비추어 시류에 다소 역행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시설규모가 작은 편이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새로운 명칭 사용에 따라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 판단됨.

- 금번에 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추가된 시설로는 세미나실과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본 시설의 사용료를 기존 소회의실 사용료와 동일한 25,000원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시설 사용료도 종전과 같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였음.

4.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②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입주일자가 언제인가?

○답변 : 6월 17일 입주하였음.

▶질의 : 안 제10조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여성단체란 어디를 뜻하는가?

○답변 : 시에 등록된 여성단체를 말함.

▶질의 : 중간에 행사가 종료된 경우 사용료 관계는?

○답변 : 시간으로 계산해서 정산하게 됨.

5. 심사결과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②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문화체육과	1	탄금사정관리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충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별표] 충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경제 과	1	• 일반산업단지 관 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 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에 의하여 위탁 한 일반산업단지 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 률 제30조, 제 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문 화 체 육 과	1	탄금사정관리	충주시체육시설관 리운영조례	